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주유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업자등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 6. 22., 2021. 7. 27.>

③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또는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이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6. 22.>

1.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2. 주유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6. 22.>

⑤ 제3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5. 6. 22.>

[본조신설 2011. 6. 15.]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1. 사업자단체

2. 운송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4.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한 자(이하 "차고지설치자"라 한다)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면 공영차고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 ·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2., 2018. 4. 17.>

③ 제2항에 따라 시 · 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설치 ·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 ·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 4. 17.>

④ 차고지설치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 · 운영계획을 수립 · 변경하거나 인가 · 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17.>

⑤ 시 · 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시 · 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의 설치 · 운영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그에 관련된 각종 인가 · 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46조의4를 준용한다.<신설 2011. 6. 15., 2018. 4. 17.>

⑥ 차고지설치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 · 운영계획을 수립 · 변경하는 경우 공영차고지의 설치 · 변경이 학생의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7.>

제46조 삭제 <2015. 6. 22.>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경로 및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